



# Samil PwC Monthly Newsletter

April 2024

## Hot Topic

- PwC가 제시하는 미래의 8대 핵심 기술: AI를 중심으로
- IRA 주요 내용과 영향 점검



삼일회계법인



# Contents

## Hot Topic

- PwC가 제시하는 미래의 8대 핵심 기술: AI를 중심으로 요약본 03
- (시행 후 1년 6개월 경과) IRA 주요 내용과 영향 점검 요약본 11

## ESG

- ESG Thought Leadership 18
- ESG 국내외 동향 20

## GAAP

- 2024년 New IFRS 29

## GAAS

- 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 32
-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추진 및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 추가 (금융위원회) 34

## Tax

- Tax News 37
- 최신 개정 동향 39
- 최신 예규·판례 43

## Governance

- 인공지능(AI)의 가능성과 이사회의 4가지 과제 (거버넌스 포커스 Vol.24) 요약본 48



## 삼일PwC 이달의 Contents

### Insights



#### Samil PwC 프리미어 부동산 레터 Vol.7 (April 2024)

'초고령화, 부동산 변화의 원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러가기 \(Click\)](#)

### YouTube



####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

####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개선 (feat.책무구조도)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최근 다양한 금융 사고로 인해 새롭게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설명합니다.

[영상 보러가기 \(Cl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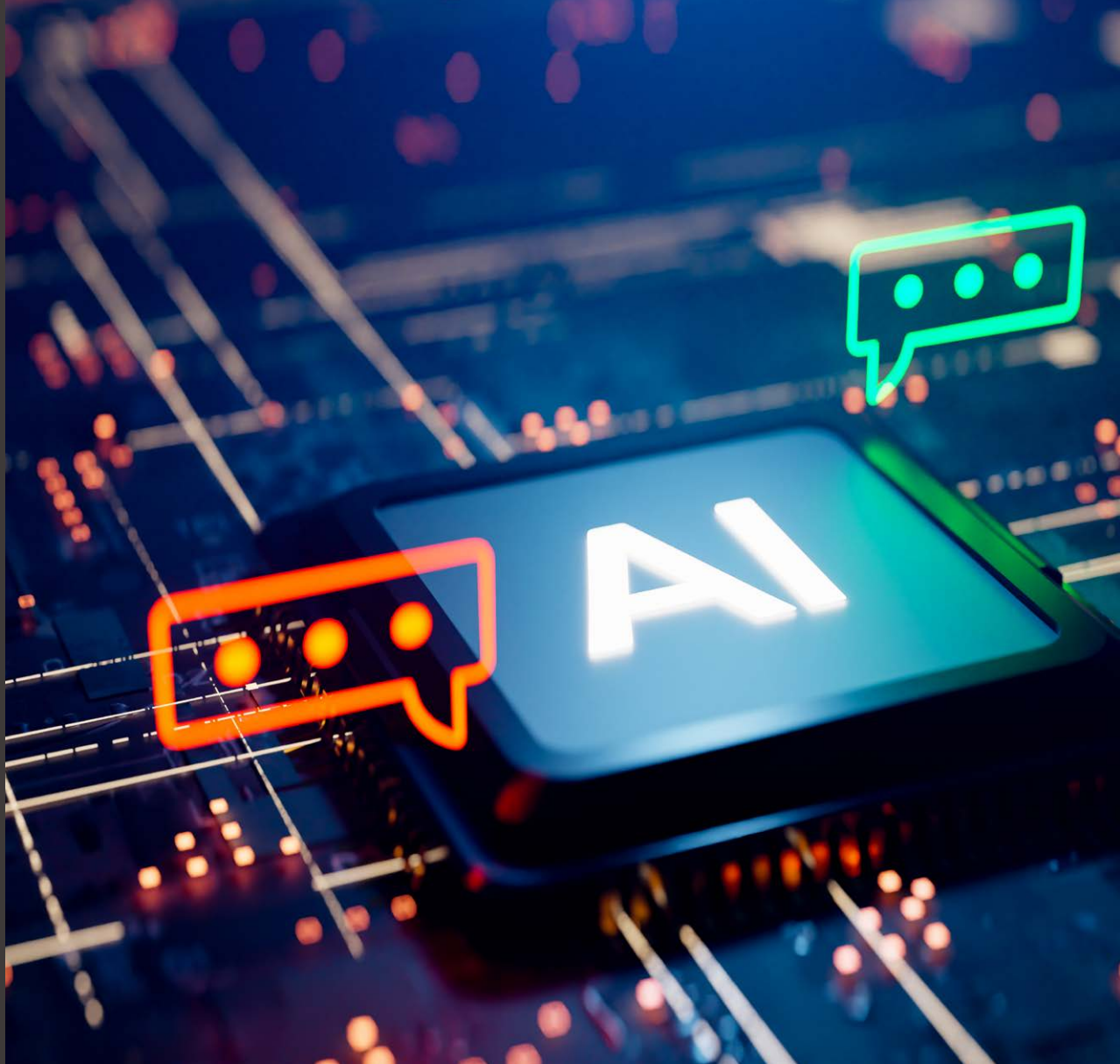
### Event



####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 방안 (실제 Case 중심)' 세미나 2024년 4월 26일 (금) 오후 2시 · 아모레홀 & YouTube Live 동시진행

PwC ESG 전문가들이 참석해 EU CSRD·ESRS의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행사 안내 보러가기 \(Click\)](#)



# Hot Topic 1

## PwC가 제시하는 미래의 8대 핵심 기술: AI를 중심으로

[저자: 정재국 삼일PwC 테크놀로지 산업 Leader]

우리 기업은 인공지능(AI), 로봇틱스, 가상·증강현실(AR·VR) 등의 디지털 기술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을까? 대다수 경영진은 지금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sup>\*1</sup>이나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sup>\*2</sup>과 같은 낯선 기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적용할지 고민할 것이다.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즈니스 전략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PwC는 250여 개 이상의 디지털 기술 가운데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8대 핵심 기술을 선정했다. 특히 기업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의 우선순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 성숙도와 투자 가능성(비즈니스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8대 기술을 세 가지 유형(확장 예상 기술, 평가 필요 기술, 모니터링 필요 기술)으로 나눠 정리했다.

이에 더해, 8대 핵심 기술의 트렌드 및 주요 활용 영역, 기업의 도입 전략, 향후 전망 등을 정리하여, 기업이 회사 내부 및 비즈니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도출했다.

\*1 양자역학을 활용해 기존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

\*2 인간의 뇌 기능을 모사해 작동 원리를 컴퓨팅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술



**[유형 1] 현재 활용도가 높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Essential to expand)**

|                                    | 활용 영역  | 도입 전략  |
|------------------------------------|--|--|
| <p><b>①</b></p> <p>인공지능 (A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생산성 제고<br/>예) 업무 관련 질문 답변, 반복 업무 자동화</li> <li>• 의사결정 지원<br/>예)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요약, 분석 제공</li> <li>• 이해관계자 신뢰<br/>예) 사이버 보안, 공급망 관리 감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빠르게 도입하여 조기에 ROI 확보</li> <li>• AI 적용을 위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직원들을 준비시킬 것</li> <li>• 책임있는 AI 사용 문화 확산</li> </ul>                           |
| <p><b>②</b></p> <p>사물인터넷 (Io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측적 유지 보수, 스마트 에너지 및 원격 모니터링<br/>예) 장비 고장 예측, 에너지 사용 패턴 수집</li> <li>•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br/>예) 생산 시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자원 투입량 개선</li> <li>• ESG 지원<br/>예) 탄소 배출 시설 데이터 확보, 설비 전략 제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T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반을 잘 준비해야, 향후 확대 적용 가능</li> <li>• 모니터링을 위한 IoT 사용, 이를 통한 운영 효율성 개선</li> <li>• IoT를 통한 고객 경험 개선 및 전략 강화</li> </ul> |



**[유형 2] 기업 내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기술 (Essential to evaluate)**

|   | 활용 영역   | 도입 전략   |
|---|---|---|
| <p><b>3</b></p> <p><b>블록체인</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금융 거래<br/>예) 신원 증명을 통한 거래 및 결제</li> <li>• 자산의 토큰화 (Tokenization)<br/>예) 투자 자금 등 유형자산 디지털화하여 발행 및 교환</li> <li>• ESG 지원<br/>예) 환경 모니터링 보고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세한 타사 사례 검토와 규제 영향에 대한 검토</li> <li>• 가치사슬 전반에서 블록체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검토</li> <li>• 잠재적인 협업 파트너를 검토</li> <li>• 블록체인 전문 인력 확보</li> </ul> |
| <p><b>4</b></p> <p><b>가상현실 (VR)</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생산성 교육<br/>예) 가상 환경에서 고난이도 업무 연습</li> <li>• 실제보다 더 나은 업무 환경 제공<br/>예) 향상된 현실감으로 협업 업무 진행</li> <li>• 원격 협업<br/>예) 사실적 아바타로 가상 현실에서 직원 간 업무 유대감 향상</li> <li>• 고객 참여<br/>예) 현실적인 가상 환경에서 브랜드 마케팅 진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된 타사 VR 도입 사례 적용</li> <li>•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분위기 형성</li> <li>•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기회 확대</li> </ul>  |
| <p><b>5</b></p> <p><b>증강현실 (AR)</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경험 제공<br/>예) 실제 제품 디지털 형상화해 간접 체험</li> <li>• 원격 교육 및 원활한 원격 업무 지원<br/>예) 원격으로 실감나는 교육 및 전문가 지원</li> <li>• 디자인 및 시각화<br/>예) 실제 상품에 디자인 오버레이하여 시각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드웨어 옵션에 대한 검토 필요</li> <li>• 사용자에게 집중하기</li> <li>• 시범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역 찾기</li> </ul>  |
| <p><b>6</b></p> <p><b>고성능 로봇틱스</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성 개선 필요한 제조 분야<br/>예) 협동 로봇으로 복잡한 작업 대신 수행</li> <li>• 노동력 지원<br/>예) 인력 부족한 산업 영역에서 업무 지원 (예, 의료 분야)</li> <li>• 전문가 지원<br/>예) 고난이도의 외과 수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틱스 기술 적용 시, '가치'가 만들어지는 영역을 정확히 파악</li> <li>• 로봇을 데이터 수집 자산으로 활용</li> <li>• 로봇에 AI 접목</li> </ul>                                 |

**[유형 3]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주류 기술은 아니며 파급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술**  
(Essential to experiment)

|  | 활용 영역   | 도입 전략  |
|--|---|--|
| <p><b>7</b></p> <p><b>양자 컴퓨터</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관리 및 사기 방지<br/>예) 투자 포트폴리오 사기 사전 식별</li> <li>• 제약 개발 및 의료<br/>예) 양자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신약 개발</li> <li>• 공급망 관리<br/>예) 전 세계 공급망 재고 관리</li> <li>• 에너지 공급<br/>예)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너지 그리드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적화를 위해 초기 도입할 적절한 영역을 정의</li> <li>• 전략적 협업 구축</li> <li>• 전문성을 위한 리소스를 할당하고 아이디어를 수집 (클라우드 소싱)</li> </ul> |
| <p><b>8</b></p> <p><b>뉴로모픽 컴퓨팅</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주행차<br/>예) 동적 업데이트로 자율주행차 안전 및 안정성 제공</li> <li>•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br/>예) 의료 데이터의 신뢰성있는 분석으로 조기 진단</li> <li>• 로보틱스<br/>예) 뉴로모픽 컴퓨팅 적용한 로봇으로 동적 움직임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들의 뉴로모픽 컴퓨팅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li> <li>• 연구자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 확대</li> <li>• 초기 사용 사례 파악</li> </ul>              |





기업 성장과 효익을 고려해 위의 8대 디지털 기술을 우리 기업에 도입하려면, 경영진과 비즈니스 리더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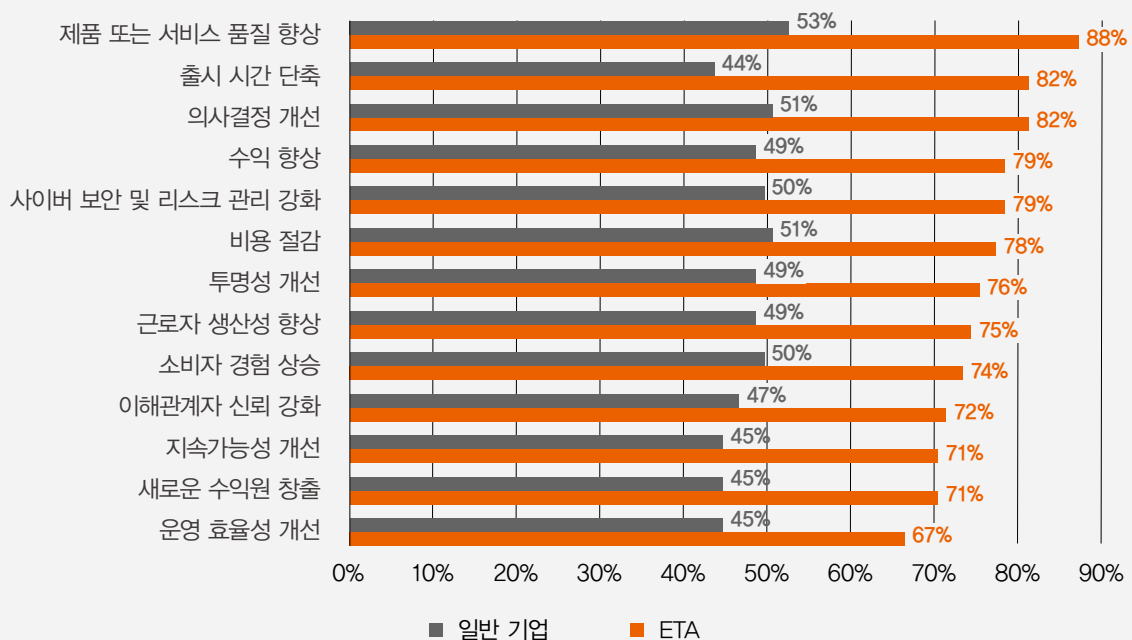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투자해 높은 가치를 추가로 창출한 기업인 Emerging Technology Accelerator(이하, ETA)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PwC는 ETA 기업을 분석해 그들의 성공 이유를 4가지로 도출한 바 있다. 우리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 4가지 전략을 통해 기업 성장과 효익을 모두 얻길 바란다.

## ETA 기업들은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경영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4가지 Lessons Learned)

ETA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투자해 달성 가치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 같은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매출, 비용 등 다방면에서 효익을 얻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ETA 기업의 3분의 2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운영 효율성 개선은 13개 효익 중 가장 낮은 수치로, ETA는 모든 영역에서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대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효익: 일반 기업과 ETA 기업 비교

Q. 귀사는 기술 투자를 통해 다음의 효익을 이미 달성했거나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는 이미 상당한 효익을 달성했다는 응답률)



## Lessons Learned

### ①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재창조하기 (Use emerging tech for reinvention)

ETA가 주목하는 디지털 기술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시장 확장과 관련됐다. ETA는 새로운 고객 경험, 차별화된 직원 경험, 특정 시장 및 사업 부문의 성장 전략을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채택하고 도입 사례를 찾아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신중하게 도입했지만, 현재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익이 높기 때문에, 파일럿 실험을 거친 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기업의 효익 측면에서 어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게 효과적인지 검토해 본 후, 해당 기술의 애플리케이션을 전사적으로 배포하는 게 좋다.

### ② 디지털 기술에 리소스 투입하기 (Allocate the right resources)

ETA는 다른 일반 기업보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더 많은 투자 자금과 인적 자원을 투입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일례로, ETA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직원의 적응력과 협업 능력, 기술의 유연한 사용 역량 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로 비즈니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 형성에 힘을 쏟는다.

디지털 기술의 가치는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발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연하게 기술을 사용하는 문화와 직원 간의 기술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 디지털 기술 지식이 없는 직원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발견 또는 개발할 수 있다.

### ③ 디지털 기술 통합하기 (Integrate your emerging tech)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은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다. IoT가 SI와 융합되면, IoT로 생성된 데이터를 SI가 분석 또는 예측해 사업장 유지 보수, 시설 안전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SI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양자 및 뉴로모픽 컴퓨팅은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켜 미래 기술인 확장현실(XR)<sup>\*1</sup>과 AI 비서<sup>\*2</sup> 등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대부분의 ETA는 디지털 기술 간 융합이 가지는 영향력과 필요성을 잘 이해한다. 특히, 8대 핵심 디지털 기술이 융합돼 함께 작동될수록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ETA는 기술 간의 융합에 집중한다.

\*1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기술.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의 개별 활용 또는 혼합 활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확장된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음

\*2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음성 또는 텍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해, 사용자의 의도를 추출하고 요청을 처리하는 등 사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④ 비즈니스 전략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 도입하기 (Embed emerging tech into your business strategy)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가 됐을 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목표를 결정하는 리더와 기술·엔지니어팀의 책임 리더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니스 전략을 잘 이해하고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리더가 기술·엔지니어팀의 리더와 협업하면 디지털 기술을 기업 전략에 연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업 내부 업무 또는 고객 대면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발굴할 수 있다.

기술·엔지니어팀 리더를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리더는 우리 기업의 전략과 목표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함께 도출한 평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리더는 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점검하고 전략을 보다 고도화시킬 수 있다.

#### 관련 자료 보러가기

본 자료는 PwC에서 2016년 발표한 8대 핵심 기술을 현 시장 상황에 맞게 보완해 발간한 'PwC가 제시하는 미래의 8대 핵심 기술: AI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및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wC가 제시하는 미래의 8대 핵심 기술: AI를 중심으로」 \(Click\)](#)



## Hot Topic 2

# (시행 후 1년 6개월 경과) IRA 주요 내용과 영향 점검

[저자: 이은영 삼일PwC경영연구원 Managing Director]

##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요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U.S. Inflation Reduction Act)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법이지만, 결국은 ‘미국의 자립법’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이 법안의 핵심으로 부상
- 보조금 관련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미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한 다음의 3가지 규정임

| 구분                         | 적용 대상                                       | 내용  |
|----------------------------|---|---|
| 친환경차 세액공제 (Sec.30D)        | 친환경차 (전기차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 배터리 핵심광물(50%) + 배터리 부품(50%)</li> <li>• 조건: 전기차 최종 생산 북미 내</li> </ul>     |
|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Sec.45X)     |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단, 핵심소재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2023년~2032년까지 적용</li> <li>• 조건: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여</li> </ul> |
| Capex(시설투자) 지원금 (Sec. 48C) | 핵심광물(미 지질조사국) + 핵심소재(미 에너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 ①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제품 제조 시설, ② 탄소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시설 일 것</li> </ul>             |

\* AMPC와 QAEPC는 중복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조금 규정은 해외우려기관(FEOC)이 연관된 경우 적용에서 제외하며, 구성 부품은 2024년 1월부터, 핵심광물의 경우는 2025년 1월부터 적용



## 2. IRA 핵심 내용 정리

- 2022년 8월 IRA 제정(친환경차 세액공제, Section 30D): 배터리 구성 부품, 물질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
  - IRA 세액공제는 최대 \$7,500/대로, 배터리 핵심광물 50%(\$3,750/대) + 부품 50%(\$3,750/대) 규정을 충족해야 함. ① 미국에 배터리 최종 제조 공장을 의무적으로 확보 ② 우려 집단의 부품(2024년), 광물(2025년)은 사용 금지하도록 함
  - 특히 배터리 광물의 가공 등을 FTA 국가 한정에서 일본 등 FTA에 준하는 국가로 확장. FTA 체결국 이외의 국가에서 채취한 광물을 이용해 FTA 준용 국가에서 50% 이상 부가가치 창출 시 보조금 수령 가능
  - 다만,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구성품) 또는 핵심광물이 FEOC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7,500/대)에서 제외됨

### IRA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을 위한 북미·미 FTA 체결국 내 조달 비율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핵심광물의 북미·미 FTA 체결국 내 조달 비율 | 40%   | 50%   | 60%   | 70%   | 80%   | 80%   | 90%   |
| 배터리 부품 북미 조달 비율            | 50%   | 60%   | 60%   | 70%   | 80%   | 90%   | 100%  |

※ 자료: 美 의회, 삼일PwC경영연구원

\*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토 의미



## ■ 2023년 12월 14일, 미국 재무부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Section 45X) 잠정 가이드스 발표

-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

- + 적용 대상: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
- + 적용 시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
- + 대상 품목: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

### IRA 내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주요 조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첨단 제조 생산<br>세액공제 | 배터리 (셀) \$35/kWh, (모듈) \$10/kWh                                       |
|                  |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 <sup>2</sup> , (폴리실리콘) \$3/kg 등 |
|                  | 풍력 (블레이드) ¢2/W, (나셀) ¢5/W, (타워) ¢3/W 등                                |
|                  | 핵심광물 생산 비용(인건비, 전기 요금, 저장비용 등)의 10%                                   |

※ 자료: 美 재무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이에 한국 기업들 미국 남동부 지역으로 꾸준히 진출 증가 추세
- 영향: 미국 내 생산 시설 구축한 국내 배터리 및 태양광·풍력 기업들에게 호재. 단, 여전히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전기차, 해외우려기관(FEOC) 지정으로 원자재 조달과 합작 투자 부담이 커진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 2024년 1월 18일,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

- 해외우려기관은 ① 우려국(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소유 및 통제하는 집단, ② 우려국에 본사를 둔 집단, ③ 우려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집단, ④ 우려집단이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집단으로 정의. 우려집단과 지분이 지분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집단으로 정의. 우려집단과 지분 조건이 없는 위탁 생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우려집단으로 분류 (영향력 행사 유무로 판단)
- 따라서, FEOC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① 중국 외 지역서 생산, ② 중국자본 지분을 25% 미만, ③ 중국(정부)에 실질적 통제 권한(소유·통제·관할·지시) 없음이 필요함
- 자동차 제조사는 2026년 말까지 핵심광물 추적시스템 구축해야 함

## □ FEOC 본격 적용에 따른 영향

|   |   |
|---|---|
| 1 | FEOC 세부지침은 IRA에 의해 제공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FEOC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   |
| 2 | 미국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전기차가 ① 2024년부터 FEOC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② 2025년부터 FEOC에 의해 추출·처리·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각각 포함해서는 안됨  |
| 3 | FEOC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재개 확대 예상   |
| 4 | 단기적으로는 엄격한 FEOC 요건 적용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차량 축소 예상 (전기차 구매 수요 약화)  |
| 5 |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미국 내 진출 어려움으로 북미 내 한국 기업의 배터리 MS 확대 기대   |
| 6 | FEOC를 제외하면 광물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한정적:<br>캐나다, 칠레, 호주, 한국 등 일부 지역에 국한  |
| 7 |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핵심광물(특히 제련은 중국 중심)과 바인더, 전해액, 분리막 등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는 미국 + FTA 체결국의 공급량으로는 미국 수요 충족은 어려울 전망   |
| 8 | 중국 업체는 LFP 밸류체인 중심으로 미국 or FTA 국가들과 협력(지분율 25% 미만)을 통해 미국 시장에 간접적 진출할 것으로 예상  |
| 9 |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최소 지분율 75%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있음<br>자금력 있는 국내 대기업에게 유리할 전망<br><br>*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물질 중 전구체, 리튬 가공(POSCO 홀딩스), 음극재(포스코퓨처엠), 전해액(엔켄, 솔브레인 홀딩스) 관련 현재 생산 중인 한국 기업에게는 특히 긍정적임 |





### 3. IRA 핵심 내용 정리

- FEOC 관련, 한-중 합작회사의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 비용(중국의 25% 넘는 지분에 대해서 추가 인수 및 세금 부과 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때문에 향후 기대 이익도 줄어들 위험 존재
- 정치적 이슈 면에서 2022년 8월 바이든에 의해 발효된 IRA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 트럼프의 'IRA 정책 폐지' 주장 때문
  - 트럼프 행정부의 추후 IRA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이외의 회사들이 추가 관세나 세금을 부과 가능성이 있음

### 4. 결론: Implication

- **[단기] IRA 규정을 100%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
  - 2025년부터 핵심광물은 FEOC를 제외하고 최소 60%의 비중을 달성해야 함. 현재 모든 금속 화합물의 FEOC 비중은 최소 20%(리튬) ~ 최대 90%(음극재)의 분포를 보임
  - 따라서 현재 수준으로는 Non-FTA 국가, FEOC에 라이선스 제공 등의 예외 조항 적용 없이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국 및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핵심광물 수입 비중은 매우 미미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의존도는 높은 상황임

+ 따라서,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핵심광물의 새로운 수요처 개발 차원의 국가 간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 협력(아프리카 지역 개발 등)이 절실한 상황임

- **[중기] 배터리 셀은 북미 현지 생산 핵심광물 및 구성물질은 탈중국화 및 FTA 체결국 중심으로 밸류체인 구축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관련 국내 또는 FTA 체결국 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
- **[중장기] 핵심광물 리튬 니켈 확보 방안 필요: 북남미 및 FTA 체결국 한국 등 제련소의 중요성 부각**
  - 2030년 기준 핵심광물은 미국 + FTA 체결국의 공급향으로 미국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련소가 대부분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2030년까지 증설 예정 제련 Capa 기준을 보면 리튬 57%, 니켈 35% 코발트 47% 수준의 추가 증설이 필요)
  - 부품의 경우는 바인더 전해액 분리막의 Capa 확보가 관건임

### 관련 자료 보러가기

본 자료는 삼일PwC경영연구원에서 발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해외우려기관(FEOC) 지침 발표에 따른 영향 점검'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및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해외우려기관\(FEOC\) 지침 발표에 따른 영향 점검」 \(Click\)](#)



# ESG

# ESG Thought Leadership

##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삼일PwC ESG Platform은 지난 2024년 3월 6일에 확정된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에 따른 공시 일정, 공시 요구사항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의 6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024년 3월 15일 미국의 화석연료 기업이 청원한 SEC 기후 공시 규칙 효력 정지 신청을 미국 남부 5개 주\*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SEC의 기후 공시 규칙 시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 주요 내용 (요약)

#### 1 공시 일정

| 법인 구분<br>*1              | 재무제표<br>주식<br>(Reg. S-X)  |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Reg. S-K)         |  |                           |                                  |                                  |                           |
|--------------------------|---------------------------|----------------------------------|--|---------------------------|----------------------------------|----------------------------------|---------------------------|
|                          |                           | 기후 관련<br>공시<br>(1500~1504)<br>*2 | 지출 및<br>재무적 영향<br>(1502(d)(2),<br>1502(e)(2),<br>1504(c)(2))<br>*3 | Scope<br>1&2<br>(1505)    | Scope<br>1&2<br>제한적 인증<br>(1506) | Scope<br>1&2<br>합리적 인증<br>(1506) | XBRL<br>적용<br>(1508)      |
| 상장 대기업                   | 2025년<br>정보<br>(2026년 공시) | 2025년<br>정보<br>(2026년 공시)        | 2026년<br>정보<br>(2027년 공시)  | 2026년<br>정보<br>(2027년 공시) | 2029년<br>정보<br>(2030년 공시)        | 2033년<br>정보<br>(2034년 공시)        | 2026년<br>정보<br>(2027년 공시) |
| 상장 중견기업<br>(SRC, EGC 제외) | 2026년<br>정보<br>(2027년 공시) | 2026년<br>정보<br>(2027년 공시)        | 2027년<br>정보<br>(2028년 공시)  | 2028년<br>정보<br>(2029년 공시) | 2031년<br>정보<br>(2032년 공시)        | 해당사항<br>없음                       | 2026년<br>정보<br>(2027년 공시) |
| 상장 소기업,<br>SRC, EGC      | 2027년<br>정보<br>(2028년 공시) | 2027년<br>정보<br>(2028년 공시)        | 2028년<br>정보<br>(2029년 공시)  | 해당사항<br>없음                | 해당사항<br>없음                       | 해당사항<br>없음                       | 2027년<br>정보<br>(2028년 공시) |

\*1 상장 대기업: 시총 \$7억 이상  
 상장 중견기업: 시총 최소 \$0.75억 ~ \$7억 이상 + 연 매출 \$1억 이상  
 상장 소기업: 시총 \$0.75억 미만 또는 시총 \$0.75억 이상 ~ \$7억 미만 + 연 매출 \$1억 미만  
 SRC(Smaller Reporting Company), EGC(Emerging Growth Company)

\*2 상기 표에 별도로 명시된 항목(지출 및 재무적 영향, Scope 1&2 및 그 인증, XBRL 적용) 이외 기후 관련 공시

\*3 1502(d)(2): 기후 관련 위험의 완화·적응 활동 관련 중요한 지출 및 재무적 추정·가정에 미치는 영향  
 1502(e)(2): 기후 관련 전환계획 이행 관련 중요한 지출 및 재무적 추정·가정에 미치는 영향  
 1504(c)(2): 기후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영향

## ② 공시 요구 사항

###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요구사항 (Regulation S-K)

|                                      |  |
|--------------------------------------|--|
| Items (1500~15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관련 정의</li> <li>기후 관련 지배구조</li> <li>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전망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영향</li> <li>기후 관련 위험 관리</li> <li>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 등</li> </ul> |
| Items (1505~15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amp;2)</li> <li>온실가스 배출량 인증</li> </ul>  |
| Items (15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관련 공시 세이프 하버</li> </ul>  |
| Items (15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시 일정 및 XBRL 등</li> </ul>   |
| <b>재무제표 공시 요구사항 (Regulation S-X)</b> |  |
| Article (14-01~14-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관련 재무지표 등</li> </ul>  |

## ③ 기업 준비 및 고려 사항

|                  |   |
|------------------|---|
| 공시 전략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C 기후 공시 규칙에 대한 이해</li> <li>정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파악</li> </ul>   |
| 기준 및 지표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시에 필요한 기준과 프레임워크 확인</li> <li>현재 기업의 공시 현황과 SEC 기후 공시를 위한 기업 준비 수준 등 현황 파악</li> <li>SEC 기후공시 갭(Gap) 평가, 우선순위 평가 등</li> </ul>   |
| 정보 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C 기후 공시에 필요한 정보 수집</li> <li>이해관계자의 기대와 공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 수준 조정</li> <li>정보 수집 도구, 지침, 분석 개선</li> <li>강력한 통제하에 정보를 수집,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 정보 제공</li> <li>데이터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검증 프로세스 활용</li> </ul> |
| 통제 환경 구축 및 정책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제 환경 구축</li> <li>정보의 퀄리티와 공시를 위한 핵심 통제 변수 식별</li> <li>공시의 일관성을 위한 공식적인 정책 및 절차 수립</li> </ul>   |
| 디지털 플랫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를 수집하고 공시할 수 있는 플랫폼 활용 고려</li> </ul>   |
| 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공개에 집중</li> </ul>   |

### 관련 자료 보러가기 (Click)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 [삼일PwC, 2024, 3]

## ESG 국내외 동향

### 1. '기후 공시' 다음은 '자연자본 공시', 기업이 알아야 사항은?

최근 환경부가 자연 자본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자연자본 관련 공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후 변화 관련 공시 다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연자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연자본 손실'도 재무 위험으로 연결

2021년 6월 5일, 자연자본의 손실이 곧 기업의 재무적 위험으로 연결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자연자본 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인 TNFD\*1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TNFD는 자연자본 관련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14가지 권고 사항을 담은 자연 관련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TCFD\*2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 공시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TNFD 가이드라인도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IFRS\*3 재단 산하 ISSB\*4는 지난해 발표한 기후 관련 공시기준에 이어, TNFD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연자본 관련 공시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 관련 정보공개협의체

\*2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재무정보공개 협의체

\*3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재단

\*4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경제 생산량의 절반 이상, 자연자본에 의존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PwC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세계 경제 생산량의 절반 이상(55%)을 자연자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58조 달러에 달합니다.

자연자본 손실은 기업 비즈니스와 자본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부품인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을 추출하고 처리하는 데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며, 건설에 필요한 목재는 비옥한 땅이 있는 숲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자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 경관을 활용할 때도 자연자본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① 자연자본 의존도 높은 5대 산업

PwC가 자연자본 손실로 인해 재무적 위험 노출도가 높은 산업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산업이 자연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① 농업, ② 임업, ③ 어업 및 농업, ④ 식음료 및 담배, ⑤ 건설업이 자연자본 의존도가 가장 높은 5대 산업으로 꼽혔습니다. 이는 자연자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에 속한 기업일수록 자연자본 손실에 의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산업별 자연자본 의존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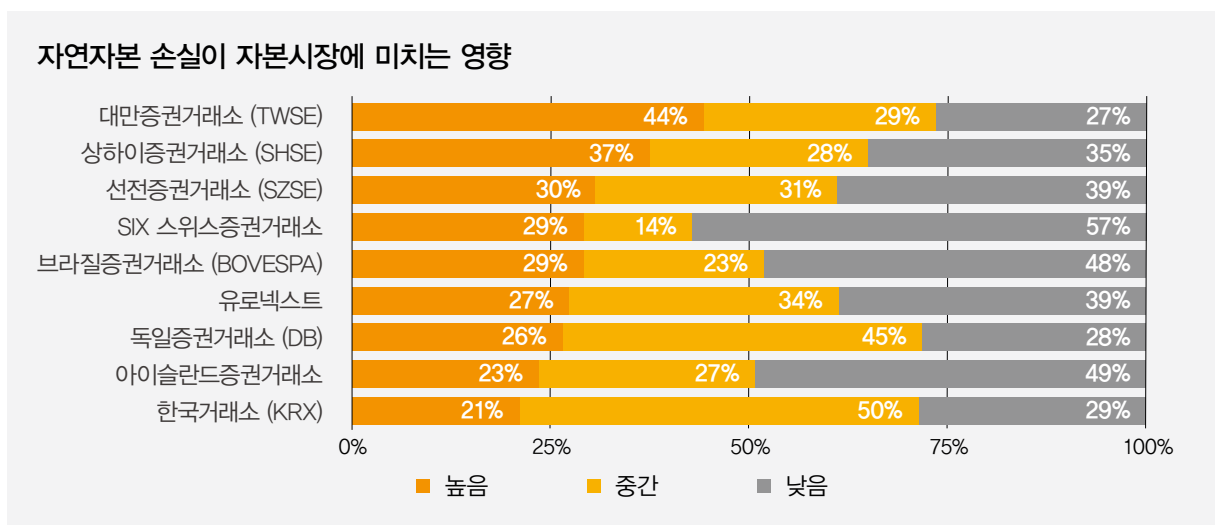
| 구분 | 산업  |
|----|---|
| 높음 | 농업, 임업, 어업 및 농업, 식음료 및 담배, 건설   |
| 중간 | 상수도, 에너지, 화학 및 재료, 물류 및 운송, 자동차, 디지털 통신, 부동산, 소매·소비재·라이프스타일, 항공·여행·관광, 광물, 전자제품 |
| 낮음 | 은행, 보험 및 자산관리, 정보 기술, 의료 서비스  |

※ PwC, *Managing nature risks: From understanding to action* (2023. 4)

### ② 자연자본 손실 위험은 자본시장에도 영향

자연자본 손실은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PwC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증권거래소 19곳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 절반 이상이 자연자본 손실에 의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거래소 19곳 가운데, 대만증권거래소(Taiwan Stock Exchange, 이하 TWSE)가 자연자본 손실에 의한 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wC는 TWSE에 상장된 기업 가치의 70% 이상이 자연자본 손실에 의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자연자본 의존도가 중간 정도인 에너지 기업이 TWSE 상장 기업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19개 국가 중 9번째로 자연자본 손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PwC, *Managing nature risks: From understanding to action* (2023. 4)

## 자연자본 공시를 위한 'LEAP' 접근법

자연자본 손실이 기업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중요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TNFD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을 위한 자연자본 관련 공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은 TNFD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시 요구사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TNFD의 14개 공시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TNF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LEAP 접근 방식에 따라 기업과 관련된 자연의 접점을 식별하고(Locate), 자연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을 평가한 후(Evaluate), 기업의 위험과 기회를 측정해(Assess), 이에 대응하고 공시를 준비(Prepare)할 수 있습니다.

| LEAP 접근 방법          |                           |                               |                   |
|---------------------|---------------------------|-------------------------------|-------------------|
| Locate              | Evaluate                  | Assess                        | Prepare           |
| <b>자연과의 접점 식별</b>   | <b>의존성과 영향 평가</b>         | <b>위험과 기회 측정</b>              | <b>대응 및 공시 준비</b> |
| <b>L1</b>           | <b>E1</b>                 | <b>A1</b>                     | <b>P1</b>         |
|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 사슬의 범위 | 환경 자산, 생태계 서비스 및 영향 동인 식별 | 위험 및 기회 식별                    | 전략 및 자원 할당 계획 수립  |
| <b>L2</b>           | <b>E2</b>                 | <b>A2</b>                     | <b>P2</b>         |
| 의존성과 영향 스크리닝        | 의존성과 영향 식별                | 기존 위험 완화 방안, 위험 및 기회 관리 방안 조정 |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
| <b>L3</b>           | <b>E3</b>                 | <b>A3</b>                     | <b>P3</b>         |
| 자연과의 접점             | 의존성과 영향 측정                | 위험 및 기회 측정, 우선순위 지정           | 공시                |
| <b>L4</b>           | <b>E4</b>                 | <b>A4</b>                     | <b>P4</b>         |
| 우선 순위 지역과의 접점       | 영향 중대성 평가                 | 위험 및 기회 중대성 평가                | 공시 내용 발표          |

### 관련 영상 보러가기 (Click)

삼일PwC ESG Platform은 자연자본, 생물 다양성 및 TNFD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삼일PwC 공식 YouTube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생물다양성이 Next 주제인가? - \[삼일PwC\]](#)



## 2.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 확정, 기업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최근 자사의 ESG 정책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사인 대만과 한국 반도체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고객사가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협력사도 고객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활동이 비즈니스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장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모두 확정된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함께, 기업 경영진이 챙겨야 할 사항을 짚어봅니다.

### +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이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기틀을 잡고,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견인한 3개 기관에서 만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일컫습니다.

- 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S1, S2'
- ②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
- ③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

## 국제사회 논의 후 4년 만에 공시 기준 확정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국제 사회에는 400여 개의 ESG 공시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가 연례 서한에서 ESG를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이후, 같은 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단일화를 지지하면서 공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ESG 공시 기준 가운데 기업이 어떤 기준을 채택할지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투자자는 표준화된 기준이 없자보니 기업 정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듬해 2021년, 주요 20개국(G20)의 지지를 받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sup>\*1</sup>)가 설립됐고, 이후 공시 기준을 만들던 여러 국제기관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sup>\*2</sup>의 첫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EU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sup>\*3</sup>과 기준<sup>\*4</sup>을 마련했고, 그간 정치적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미국도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 공시 규칙'을 이달 6일 확정했습니다.

\*1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전 세계 146개국이 도입한 회계기준을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산하 기관

\*2 IFRS S1 & S2: ISSB가 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며, S는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약자로 S1은 일반요구 사항, S2는 기후 관련 공시 내용으로 구성

\*3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지침으로 공시 대상 기업과 시기 등으로 구성

\*4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U의 ESG 공시 기준으로 2개의 공통 기준과 10개의 ESG 주제별 기준으로 구성

## 공시기준 표준화의 두 가지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공시 기준이 마련되면서, EU와 미국 중심의 주요국 규제기관은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규제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던 기존 관례를 의무 공시로 전환하고, 보고하는 기업에 법적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글로벌 3대 공시 기준 모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동안 비재무 정보로 여겨졌던 ESG 정보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이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글로벌 주요 규제기관과 자본 시장의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 비교 분석

글로벌 3대 공시 기준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 IFRS™                                 | EFRAG<br>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  |
|--------------|---------------------------------------|---|--|
| 공시 기준        | ISSB                                  | EU CSRD·ESRS  | SEC Reg. S-K-S-X   |
| 보고 토픽        | 기후(S2)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S1)       |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괄                                      | 기후 관련 위험   |
| 정보 이용자       | 투자자                                   | 다양한 이해관계자   | 투자자  |
| 대상 회사        | 각 국가 관할 당국에서 결정                       | EU 상장사·대기업 & Non-EU 모회사                               | SEC 상장사  |
| 보고 범위        | 중속기업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 공시                   |   |  |
| 보고 Framework | 4가지 핵심 항목(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공시 |   |  |
| 보고 위치        |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                         | 사업보고서의 일부   | 사업보고서의 일부  |
| 시행일          | S1, S2 ~ FY24<br>(2025년 공시)           | 기업규모 등에 따라<br>FY24 (2025년 공시)<br>~<br>FY28 (2029년 공시) | 기업규모 및 정보 범위 등에 따라<br>FY24 (2026년 공시)<br>~<br>FY33 (2034 공시) |

## ① 공통점: 연결기준 정보 공시, 4가지 핵심 항목 공시

먼저, 3대 공시 기준 모두 종속기업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공시 의무가 있는 모기업의 연결 기준 공시를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대 공시 기준 모두 기업에 공개를 요구하는 핵심 항목이 동일합니다. 3대 공시 기준은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목표 및 지표'의 4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5년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하고, 글로벌 유수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참여한 조직. TCFD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대해 비교 가능하면서도 일관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권고안 개발

## ② 차이점: 정보 이용자의 범위, 공시 주제, 공시 목적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한 기관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컨셉트는 조금씩 다릅니다. ISSB와 미국 SEC는 정보의 주 이용자를 '투자자'로 정의한 반면, EU는 투자자를 포함한, 소비자, 임직원, 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정보이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주제도 미국 SEC는 기후 관련 위험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EU는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ISSB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를 먼저 제정했고, 그 외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SSB의 공시 기준은 일종의 글로벌 기준선으로, 국가별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ISSB 기반으로 자국의 공시 기준을 이미 발표했거나 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EU와 미국은 독자적인 공시 기준을 먼저 확정했기 때문에, EU와 미국이 정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국가별 요구 사항에 따라 공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기업 리더를 위한 'ESG To-Do 리스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한국도 국제사회의 공시 제정 속도에 맞춰 한국형 ESG 공시 기준 초안을 4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 공시 기준 확정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감독기관의 규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정보를 취합한 후 공시 기준에 맞춰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업의 리더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공시 기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발굴하고,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 ① ESG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제표와 연계성이 높은 정보입니다. 글로벌 3대 공시 기준 모두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제3자 인증을 모두 의무화했기 때문에 공시 정보를 확신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리더는 재무제표 내부통제 관리를 담당했던 최고재무관리자(CFO)가 ESG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 ② ESG 중심 거버넌스 체계 수립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모두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진과 이사회가 지속가능성 이슈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공시를 위한 도구가 아닌,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인식을 바꿔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ESG위원회 등 ESG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업의 리더는 ESG 중심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 문화와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지속가능성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③ 지속가능한 전략 위한 새로운 이정표

지속가능성 공시를 포함한 기업의 전체 ESG 전략이 기업의 이익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리더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이정표로 삼아 자사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회사가 관리해야 할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 전사적 차원의 투자 규모와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분할해 예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산업 재해 예방에 특화된 기업을 인수해 사회적(S)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전략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The image shows a promotional graphic for the Samil ESG platform. At the top, the website header includes the logo 'Samil ESG' and navigation links for 'ESG 진단·계획', 'ESG 실행', 'ESG 공시·인증', and 'ESG 자료·동향'.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the title 'ESG 통합정보플랫폼 'SamilESG.com'' and two options for access: 'SamilESG 회원가입' (with a QR code) and 'PC접속' (with a button labeled 'Samil ESG 사이트 (바로가기)'). A hand is shown holding a smartphone displaying the mobile app interface, which includes a search bar and a news article titled '탄소 배출량 관리 및 측정'.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there is a section for '환경 (Environment)' and 'ESG 환경 과제 중 하나' with a sub-section for '온실가스'.



GAAP

회계

## 2024년 New IFRS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는 새로운 K-IFR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기업이 보고기간 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K-IFR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의 2024년에 의무적용되는 개정 기준서 및 조기 적용 가능한 기준서 중 조기 적용 여부에 대한 고려를 통해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K-IFRS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경과규정이 있는 K-IFRS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경과규정이 없는 K-IFRS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합니다(기준서 제1008호 문단 19).

또한, K-IFRS를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책변경으로 인한 영향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합니다(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





#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 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

##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마련\*하였음

\*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 1일로 도래함에 따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

## 2.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

### ①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 **(절차 명확화)** 모든 심사·감리 과정의 절차들이 명확한 근거하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 지도록 규정·매뉴얼 정비

□ 구두를 통한 자료 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 이내 이메일 등 보완)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

- **(심의 기능 강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부서 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1주일) 운영

\* 조치 수준 '고의' & '과징금 20억 원 이상' 안건 대상(필요시 산업 전문가 포함)

- **(방어권 보장)** 감리 착수 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Incentive 부여 방안 마련

□ 사전통지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고, 사전통지 이후 피조치자 요청할 경우 대면하여 절차 및 조치 사유 등을 안내

### ② 중대 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 **(감시 강화)**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시장 영향력 큰 기업 선정 비중을 확대 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 적극 실시

\* 회계부정 제보, 언론보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부적정 등

- **(효율성 제고)** 테마심사\* 회사수를 확대하여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 하고 신속히 종결

\* 2024년 주제: 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 CB 콜옵션, ③ 장기공사수익, ④ 우발부채 공시

### 3. 재무제표 심사·감리 실시 대상

- 금년도 중점 추진 과제, 감리 운영 인력, 과거 업무 수행 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0개 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 집중

\*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

- 사전 예고된 회계 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예, 10년 이상), 상장 예정 등 사유를 표본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협의심사 대상으로 선정 예정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 1. 개요

- 2024년 4월 2일 (화)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및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 확대 등을 발표함

## 2.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등

- **(추진 배경)** 주기적 지정제가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기업가치가 제고(Value-up)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 **(추진 방안)**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하여 외부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선정하며,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사유로 추가할 예정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목표 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5월 수상 (예: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상, 거래소 이사장상 등 약 10여개 사)

- **(향후 계획)**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20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적용할 계획

### 3.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추진 방안)** 정부 및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2024년 2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시 공개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

####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 분야    | 인센티브                           | 비고              |
|-------|--------------------------------|-----------------|
| 세무회계  | ① 5종 세정지원*                     | 2024년 2월 26일 발표 |
|       | ②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 신규              |
|       | ③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 신규              |
| 상장공시  | ④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 신규              |
|       | ⑤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 신규              |
|       | ⑥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 | 신규              |
| 홍보 투자 | ⑦ 거래소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2024년 2월 26일 발표 |
|       | ⑧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 2024년 2월 26일 발표 |

\* 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 (② R&D 공제 사전심사, ③ 법인세 감면 컨설팅, ④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⑤ 가업승계 컨설팅

- **(세무회계 분야)** 회계 관련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 조치 시 표창 수상 경력을 감경사유 중 하나로 추가 예정
- **(상장공시 분야)** 회계 관련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상장·공시와 관련하여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 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 계획, 또한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해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



# Tax

(Korean Tax Update - Samil Commentary, April 2024)

## Tax News

### 정부,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3월 19일 자본 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따르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또한, 정부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 등은 추가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임.

### 정부, 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지원 등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2024년 3월 28일 LH의 건설사 부실 사업장 토지매입과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함. 정부가 발표한 주요 세제 지원 방안에는 LH가 건설사의 부실 사업장 보유 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시 취득세의 25%를 감면(법 개정 전제)하는 방안과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시 취득세 종과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限) 및 증부세 합산배제하는 지원방안이 포함됨.

### 정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2024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함. 이에 따르면 2024년 예상된 국세감면액은 77.1조 원, 국세감면율은 16.3%로 2023년도 전망치인 국세감면액 69.5조 원과 국세감면율 15.8%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조세지출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음: (i)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ii)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 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기술 범위의 지속적 보완; (iii) 일자리를 통해 사회 이동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청년·경단년·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iv) 상장기업의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 (v) 서민·취약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제지원 지속 및 (vi)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2024년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국세청, 2024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 세수는 335.7조 원으로 전년 384.2조 원 대비 12.6%(48.5조 원) 감소함. 2023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8조 원(34.5%), 법인세 80.4조 원(23.9%), 부가가치세 73.8조 원(22.0%) 순으로 집계됨. 이 밖에 상속·증여세는 14.6조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 원, 개별소비세 8.8조 원 등으로 집계됨.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2022년(97.0%)에 비해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 국세: 국세청 세수 + 관세 +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 최신 주요 개정 동향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 3. 26.)

#### ■ 개정 이유

-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지급하는 주체를 납세의무자 및 위탁자 등으로 정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공포, 2024. 4. 1. 시행)됨에 따라, 비용 지급 주체에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소형 주택을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 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 3. 22.)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각 업계의 금형(金型)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업종과 상관없이 5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소형 신축주택 등의 요건을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이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 3. 22.)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식을 정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군사위성체계·유무인복합체계 제작시설 및 수소환원제철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 3. 22.)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 3. 22.)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익법인 등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관련 서식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화·골동품 등을 별도의 재산종류코드로 분류하여 증여재산의 분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 3. 22.) 등

### ■ 개정 이유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의 범위를 조정하며,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정보를 정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타 개정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2호, 2024. 3. 26.)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66호, 2024. 3.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 3. 22.)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 3. 2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 2024. 3. 22.)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 3. 22.)
-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2024. 3. 22.)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8호, 2024. 3. 22.)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6호, 2024. 3. 22.)
-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1호, 2024. 3. 22.)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0호, 2024. 3. 22.)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 3. 26.)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2호, 2024. 3. 26.)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2024. 3. 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63호, 2024. 3. 29.)

## 최신 예규·판례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증가세율 배제 적용 시 농특세 비과세 여부

#### ■ 쟁점사항

- 농특세법은 농특세 과세대상이 되는 '감면'에 대해 지특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거나 또는 취득세 특례세율(지법 §15 ①)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농특세법 §2 ①), 해당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감면세액에 대해 20%의 농특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특세법 §5 ① 1호)
-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증가세율 배제규정(지특법 §180의 2 ① 2호, 이하 '증가세율 배제')을 적용하여 감소한 취득세에 대해 농특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농특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임

#### ■ 처분청 주장

-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증가세율 배제를 '감면'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 10. 18.), 처분청은 지특법상 감면규정의 중복 배제규정(구 지특법 §180, 2023. 3. 14. 개정 전)을 적용함에 있어 증가세율 배제를 '감면'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결(대법2022두66125, 2023. 3. 16.)을 이유로 농특세법상으로도 증가세율 배제를 '감면'으로 보아 증가세율 배제로 감소한 취득세에 대해 농특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임

#### ■ 결정요지

- 그러나, 심판원은 농특세법에서 증가세율 배제를 농특세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전술한 바와 같이 유권해석에서 증가세율 배제를 농특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증가세율 배제는 농특세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조심2023지5596, 2024. 3. 14. 외), 이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증가세율 배제를 '감면'으로 해석한 전술한 대법원 판결은 지특법상 중복 배제규정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 시사점

- 즉, 이번 심판례는 지특법상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와 농특세법상 농특세 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증가세율 배제가 '감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각각 불일치함을 시사하므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집합투자재산(REF)·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증가세율 배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지특법상으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다른 감면규정과의 중복 적용이 금지되는 반면, 농특세법상으로는 '감면' 규정이 아니므로 증가세율 배제로 인해 감소한 취득세에 대해 농특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취득요건 판단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의 포함 여부

### ■ 쟁점사항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내국법인(이하 '인수법인')이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12의 4, 이하 '쟁점 세액공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피인수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지배시 30%)를 초과해야 한다는 '주식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조특법 §12의 4 ① 2호)
-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인수법인이 같은 날 구주 매입(12%)과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인수(43%)를 통해 피인수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를 포함한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주식취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 ■ 회신요지

- 이번 유권해석은 쟁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주식취득 요건 판단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제외된다는 입장으로, 이는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닐 것을 공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조특법 §12의 4 ① 4호), 이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기존 구주의 취득을 전제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함을 의미하는 점, 쟁점 세액공제는 벤처 창업자 등의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벤처 창업자 등의 기존 구주가 아닌 피인수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신주는 쟁점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이 고려된 해석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2024. 1. 22, 서면-2023-법규법인-0683, 2024. 1. 24.)

### ■ 시사점

- 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기업의 쟁점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취득 요건, 즉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피인수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지배시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중 피인수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매입한 구주만을 포함하고 피인수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인수한 신주는 제외하여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의 대기업 전환 후 근로자가 수령한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여부

### ■ 쟁점사항

- 조특법은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근로자가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30%~90%)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있음 (조특법 §29의 6)
-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할 당시에는 중견기업에 해당했으나 근로자가 공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임

### ■ 회신요지

- 이번 유권해석은 중견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은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사전-2023-법규소득-0723, 2024. 3. 14.)

### ■ 시사점

- 이번 유권해석은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여부의 판정은 공제금 수령시점이 아니라 공제사업 가입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내일채움공제 감면규정의 문언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공제사업 가입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중소기업이 공제금 불입기간 중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배제한다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된 해석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불입하던 중 대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대기업 소속 근로자가 수령한 만기공제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규정과 유사하게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규정(조특법 §30)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업 당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2021. 12. 23. 외 다수)

## 과점주주가 되는 날과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 ■ 쟁점사항

-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고(지기법 §34 1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지기법 §46 2호)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지법 §7 ⑤),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과점주주가 되는 날과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과점주주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임

###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라는 규정에서의 ‘때’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자’를 넘어 특정 ‘시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보이고,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과세물건을 취득한 시기의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서울고법 2010누37874, 2011. 9. 7.),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된 후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부동산세제과-681, 2024. 2. 20. 외)

### ■ 시사점

- 과거 유권해석과 심판례 등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일과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를 특정 ‘시각’에 따른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일자’에 취득했다는 이유로 과점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해석하였으나(세정13407-206, 2001. 8. 10, 조심2009지0960, 2010. 2. 2, 감심2002-0068, 2002. 5. 7.), 이번 유권해석을 비롯한 최근 유권해석은 취득일이 동일하더라도 특정 ‘시각’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된 후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부동산세제과-2064, 2021. 7. 29.)
- 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날과 주식발행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동일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각보다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시각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유권해석의 입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asy View for Tax

Easy View for Tax(China)는 중국 세무 내용을 한국 세법관점에서 세무신고·납부 정보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 인공지능(AI)의 가능성과 이사회 4가지 과제

AI는 기업의 운영 및 평판 측면에서 관리해야 할 새로운 전략적 위험과 기회를 제공하며, 이사회는 AI 시스템의 신뢰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AI는 기업에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 1. AI 분수령

인공지능(AI)이 또다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AI 기술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고 꽤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고속 컴퓨터 처리 및 유비쿼터스 데이터의 융합으로 인해 접근성과 사용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ChatGPT, 바드(Bard)와 달리(DALL-E 2)를 포함한 '생성형 AI'는 소셜미디어에서 기업의 전략 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화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기업들은 거의 매일 새롭고 보다 발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으며,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는 AI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업의 경영진은 경쟁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핵심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업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위해, 이사회는 AI 기술의 잠재력과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사회가 AI 및 생성형 AI에 대해 다루어야 할 4가지 주요 영역은 아래와 같다.

- ① 이사회 접근 방식 개발
- ② 전략적 기회 포착
- ③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위험 및 통제 감독
- ④ 새로운 법규 준수

### 최근까지 AI의 진화



#### 인공지능(AI)

기계, 특히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인간 지능 프로세스의 시뮬레이션이다.



#### 머신러닝(ML)

AI의 하위 분야로,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기계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점차 성능을 향상시킨다.



#### 딥러닝(DL)

인간이 특정 유형의 지식을 얻는 방식을 모방하는 머신러닝 기술이다. 통계와 예측 모델링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 생성형 AI

프롬프트나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 콘텐츠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예: ChatGPT, DALL-E, Codex)

- 서면: 텍스트, 코드
- 시각: 이미지, 비디오
- 청각: 오디오

데이터 전문가에 의해 사용된다.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자도 AI에 접근할 수 있다.



## 2. AI 및 생성형 AI의 정의

넓게 정의 내린다면 AI는 환경을 감지하고, 감지한 내용과 목표에 따라 생각하고, 학습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AI는 컴퓨터, 앱, 계속해서 늘어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치 등이 디지털 또는 실제 세계를 인식하여 그 내용을 빠르게 처리하고, 전에는 인간의 지능이 필요했던 결정, 권고 및 조치까지 취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AI는 질문에 답하고, 범주 또는 패턴을 식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진단 또는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화된 분석(즉, 알고리즘)을 통해 디지털화된 텍스트, 사운드와 이미지(즉, 데이터)를 인식하고 해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잘 설계된 AI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유지 및 관리되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성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생성형 AI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일종의 딥러닝이다. 또한, 대부분 일상적인 언어 명령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쉽다. 간단히 말해서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문, 이미지, 비디오, 소프트웨어 코드 및 오디오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다. 생성형 AI 모델은 다양한 소스의 대량 데이터에 의해 학습된다. 사용자 프롬프트가 제공되면 텍스트를 요약하고, 코드를 생성 및 개선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테스트용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ChatGPT는 하나의 생성형 AI 도구다. 솔루션 제공업체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외에도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회사의 고유한 데이터와 지적 재산을 안전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모델에 기반하여 구축된 회사만의 독자적인 생성형 AI 시스템은 회사와 특정 부문, 사업 및 기능별 관련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미세 조정과 엔지니어링, 훈련이 가능하다.

### ① 이사회 접근 방식 개발

대부분의 기업은 계속해서 AI 사용을 확대하고 생성형 AI의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AI 활용 목표, 전략과 실행을 감독하고, AI 기술이 기업의 전략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AI 관련 위험을 관리하되, 혁신을 제한하지 않을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거나 평판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감독 역할을 맡은 이사회는 AI의 전략적 기회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위험 및 통제를 감독하며 새로운 법규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 이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이사들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를 통해 AI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활용 사례와 사업 모델의 변화 방식, 그에 따른 위험과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AI와 생성형 AI를 다룰 때, 이사들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기술과 그 활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AI 관련 역량의 보강이 필요할지, 아니면 경영진이나 제3자의 전문성에 의존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 ■ AI 기술의 비용과 효익에 대해 검토한다.

- 이사회는 AI 기술 활용이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전반적인 효익과 비용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해야 한다. 효익은 임직원의 업무 방식, 고객 참여 방식, 판매 제품 및 경쟁 방식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 방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비용은 모든 임직원에게 AI와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들 수 있다. 경영진은 임직원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속도와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AI와 생성형 AI를 실행하려면 AI를 기업에 맞게 맞춤화하고 연산 능력과 기술 플랫폼을 향상시키는 데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또 다른 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 및 구현, 사용 사례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조직(예를 들어, AI 혁신 센터)의 설립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로 수행될 경우 전사적 차원의 구현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 ■ 책임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갖춘다.

- 책임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중요하다. 거버넌스 모델은 기업에서 누가 AI 거버넌스를 책임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기업은 특정한 기술 및 개별 사용 사례와 관련된 고유한 효익과 위험 간의 균형(trade off)을 평가할 수 있다. 사업 기회, 위험, 윤리 관련 문제를 브레인스토밍하고 논의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전사적 경영진 수준의 AI 위원회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I 위원회를 설립하면 데이터와 통찰, 선도 사례의 공유를 촉진하고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맞게 결과물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영향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투자와 프로젝트를 촉진할 수 있다. AI위원회에서 CEO와 최고 경영진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한다면 AI와 생성형 AI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전사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다.

### ■ 성과 달성 측정 계획을 감독한다.

- AI 및 비즈니스 사용 사례에 대한 경영진의 우선순위를 통해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사적으로 대규모 디지털 혁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당한 투자가 요구될 수 있다. 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사회는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 전략과 계획에 대해 파악하고 사업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성공적인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주요 투자를 감독하고 인재 전략, 인프라 및 기타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감독 포인트는 경영진이 AI에 대해 단편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규모 기술 사용의 이점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한다.

- 이사회는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AI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AI 스토리는 오늘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 영향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 변화와 직원, 고객, 조직 및 기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채택한 안전장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이사회 과제: 이사회 접근 방식 개발

- 이사회는 기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
- AI 사용의 효익과 비용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경영진 중에 AI 책임자가 있는가? AI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기회, 위험, 통제를 다루고 정책을 수립하는 경영진 수준의 위원회가 있는가?
- AI 및 생성형 AI 관련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경영진의 전략 계획은 무엇이며, 이사회는 투자의 성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독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
- AI 사용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했는가?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가?
- 변화의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계속해서 혁신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가질 수 있는가?



## ② 전략적 기회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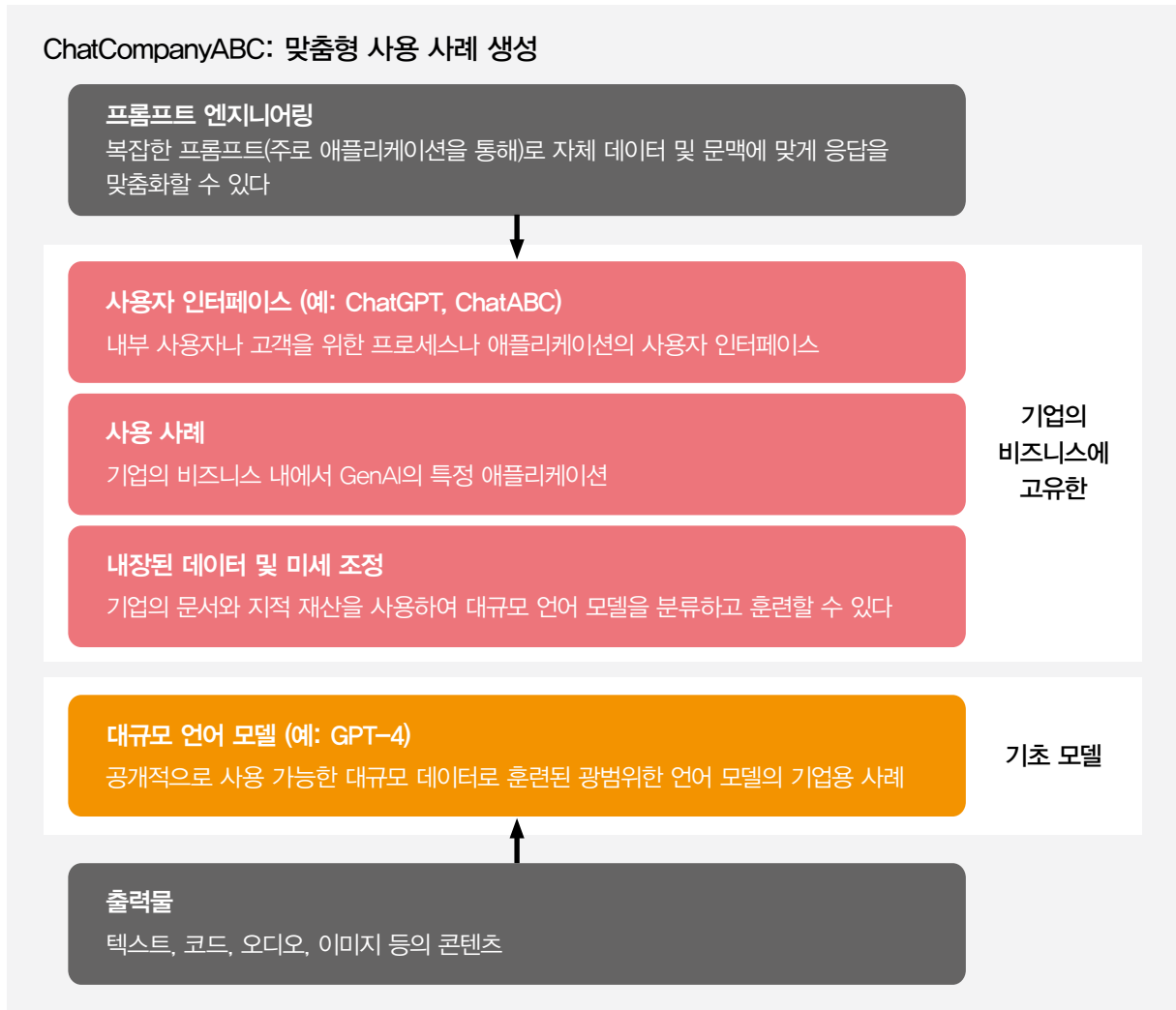
AI는 기업의 모든 수준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익과 해결책을 제공한다. AI는 무한한 데이터에서 패턴과 트렌드를 식별하고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더 빠른 비즈니스 솔루션을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은 공급망 중단과 같은 위험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대상에 대한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의 역량을 확장하는 생성형 AI의 부상은 코드 개발부터 정보 추출 및 요약,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야심차고 새로운 비즈니스 사용 사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북돋았다. 생성형 AI는 고객 서비스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업 운영 측면을 자동화하고 항상 시키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는 거의 모든 기능 부서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확인된 모든 사례가 현재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용 사례도 개선될 수 있다. AI 언어 시스템이 정교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사적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이 잘 통합되어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성형 AI가 제공할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인 가치와 위험을 기준으로 비즈니스 사용 사례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선도적인 AI 기술 제공업체와 협력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AI 시스템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3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즈니스에 제공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통해 보호되거나 클라우드 플랫폼에 없어서 잠재적으로 기업에 맞춰진다. 이사회는 기업이 누구와 협력할 계획인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특히 신규 공급업체가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 점점 진화하는 사업상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이하 LLM)을 통한 생성형 AI의 사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LLM 공급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LLM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잘 설계된 프롬프트에 의해 구동될 때, 각 기업에 적합하고 유용성을 높이는 산출물(예: 문서 초안, 이미지)을 제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AI 기술에 의해 소비되고 공유되는 정보 처리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AI와 생성형 AI 관련 기회는 직장을 변화시킬 것이다. 관련 지식이 풍부한 직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AI 사용을 위한 역량을 육성해야 하고 인재 전략의 일부로서 새로운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회 과제: 전략적 사업 기회 이해**

- 기업의 비즈니스 사용 사례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채택을 논의할 때 규모를 고려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가? 이러한 사용 사례는 다른 전략적 사업 계획과 상호 보완적인가?
- 경쟁업체는 차별화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 우선순위가 높은 비즈니스 사용 사례를 검증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외부의 AI 전문가와의 협력을 고려했는가?
- AI 활용으로 인해 기업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가?
- AI 비즈니스 사용 사례를 처리하려면 어떤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한가? 외부의 기술 제공업체와 논의 중인가? 외부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인재 전략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AI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 인력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성공하려면 어떤 새로운 전문성이 필요한가? 경영진은 사회적 영향과 장기적인 인재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 ③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위험 및 통제 감독

AI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수와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과 평판 측면에서의 위험도 증가한다. 생성형 AI는 이러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개발자는 엄청난 양의 공개 및 비공개 콘텐츠를 뛰어난 연산 능력과 결합했다.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LLM의 경우, 사용된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고 편견이 없으며 표본으로 적절한지, 또는 특정 사업적 요구와 관련이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AI 개발은 오랫동안 이러한 시스템의 코딩과 테스트 경험이 있는 IT 및 데이터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생성형 AI는 AI의 '문턱을 낮추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누구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출력물을 생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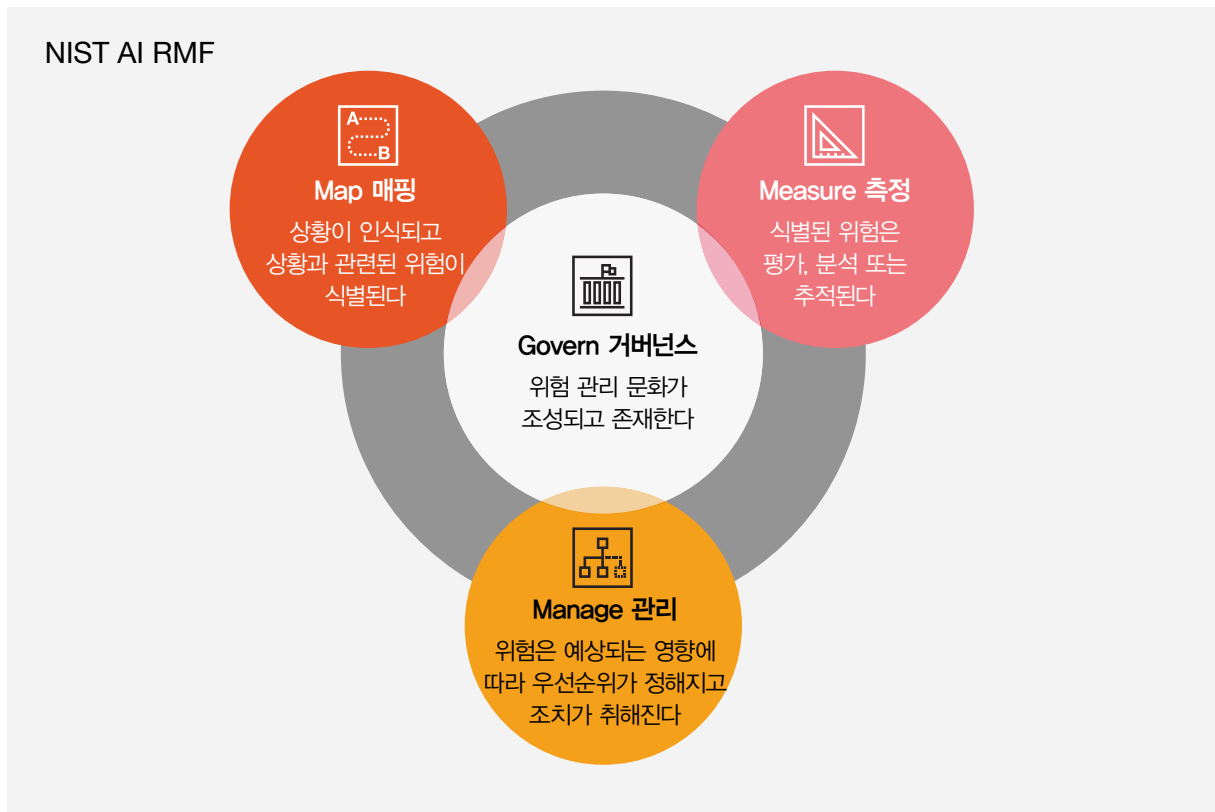
따라서 AI 기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가 포함된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위험 행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데이터는 도난 및 손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편견에 의해 취약해질 수 있다. 또한 지적 재산과 기밀 정보가 노출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부정확한 산출물과 허위 데이터 전달로 인해 법적인 위험 및 평판 관련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사회는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사들과 경영진이 책임 있는 AI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알고리즘과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정책, 통제 및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또한, 실수로든 고의로든 AI 시스템이 조작되어 관행과 결과를 생성하지 않으며, 생성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기업 가치, 전략적 목표와 규제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 신뢰할 수 있는 AI의 특징

- 기술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발자, 정부, 산업 조직 등은 이사회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AI의 거대한 효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이하 AI RMF)는 자발적 프레임워크로, 자주 채택되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이다.

AI RMF는 기업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AI 위험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I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둘러싼 기능을 매핑, 측정 및 관리한다.



※ Source: NIST AI 100-1 AI RMF 1.0

NIST 프레임워크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경영진은 이사회 지침과 감독을 통해 신중하게 관리되는 가시적인 시스템의 일부로서 AI 시스템을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해야 한다. 기업의 AI 전략과 실행을 관리하려면 모델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규제 기관, 주주,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AI가 아닌 사람이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AI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복잡한 데이터로부터 복잡한 관련성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양질의 기업별 데이터가 많을수록 모델이 특정 비즈니스 사용 사례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성 있고 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은 시스템이 허용 가능한 예상 범위 내에서 결과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지는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AI 모델이 수행하는 작업과 수행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업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사용 사례와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면, 경영진이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테스트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IT, 데이터 및 보안 거버넌스, 위험 관리, 내부감사 등 기존의 기능 부서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참여하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은 더 중요하거나 더 위험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 또는 제3자 평가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이사회 과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위험 및 통제 감독

- 기업은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는가? 기업문화와는 어떻게 부합하는가?
- 기업이 AI 기술을 책임 있게 구현하기 위해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가?
- 기업은 관련 위험, 오용, 무단 사용으로부터 AI 및 생성형 AI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 통제 및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정책이 기존에 확립된 법률, 개인정보보호, 보안, 윤리 정책 및 절차에 부합하는가? 이사회가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가?
- 명시된 정책 및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AI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내부감사 부서가 해당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 기업의 전사적 위험 관리 프로그램에 AI 관련 위험 및 데이터 보호가 포함되어 있는가?



#### 4 새로운 법규 준수

생성형 AI가 급부상하면서 규제 당국은 AI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새로운 규제와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며 규제 준수(특히 생성형 AI 관련)를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은 표준에 대해 저마다 자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차별 금지, 공정한 대출 및 서비스, 고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기존 법률을 AI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규제 당국과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많은 기업들은 더 많은 정책과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최근 생성형 AI 및 기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AI법을 채택하였다. 데이터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처럼 AI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생성형 AI 소스 콘텐츠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생성형 AI의 범주이면서 주로 조작을 목적으로 실제 사람의 이미지, 비디오 및 오디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딥페이크(Deep Fake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 이사회 과제: AI 관련 새로운 법규 준수

- AI 애플리케이션 사용 계획이 기존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 AI 및 생성형 AI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제3자와의 계약을 포함한 계약 및 지적 재산에 대한 법률 실사를 수행했는가?
- 현재 또는 예상되는 AI 계획으로 인해, 기업의 AI 기술 사용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및 법적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있는가?



### 3. 결론

AI와 생성형 AI는 기업에게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혁신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은 위험 우려, 비용-효익 검토, 규제 요구 사항 등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AI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에 있어, 이사회와 감독과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관련 자료 보러가기

본 자료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발간한 「거버넌스 포커스 Vol.24」을 요약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및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포커스 Vol.24 - 2024년 1분기」 \(Click\)](#)

# Contacts

## Technology Industry

정재국 Partner

02-709-0980

jae-kook.jung@pwc.com

## ESG

권미엽 Partner

02-709-7938

miyop.kwon@pwc.com

## GAAS

성현주 Partner

02-3781-9252

hyun-joo.sung@pwc.com

## Governance

하미혜 Managing Director

02-709-8599

mihye.ha@pwc.com

##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Managing Director

02-709-0824

eunyoung.lee@pwc.com

## GAAP

이수미 Partner

02-3781-9548

sumi.lee@pwc.com

## Tax

조영현 Director

02-3781-9238

young-hyun.jo@pwc.com

[www.samil.com](http://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4A-NL-004

© 202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